

2020년 제3회 건축소위원회(건축구조분야) 심의결과

☐ 제1호 안건

신 청 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	심의내용	구조안전심의(신규)
신청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7-5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일자	2020. 3. 31.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 아래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견】 1. 시공 시 부등축소량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 2. 전이보 오프닝에 대해서는 구조일반사항에 있으나, 구조감리 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등에 명기하여 확인 할 것. 3. 부주면 마찰력을 검토함에 있어 본 설계와 같이 선단지지말뚝의 경우, 말뚝 설치 후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부주면 마찰력은 하중으로 보기 때문에 “극한지 지력에서 부주면 마찰력을 뺀 값을 안정율로 나누어 허용지지력을 산정”하지 않습니다.(KDS 11 50 15). 따라서 선단지지말뚝에 대한 설계기준에 따라 수정 할 것. 4. 부주면 마찰력(하중)으로 인한 추가 장기 침하량 고려가 필요 ※ 심의의견 3번, 4번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행여부를 심의위원(김동욱)에게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제3회 건축소위원회(건축구조분야) 심의결과

□ 제2호 안건

신 청 인	바이스트로닉코리아(주)	심의내용	구조안전심의(신규)
신청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08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심의일자	2020. 3. 31.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 아래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의견】 1. 합성기둥의 경우 기준에 규정된 하중전달 구간 안에서 적절히 하중 분배가 발생하여 충분한 합성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2. 실험적 검증 범위를 초과하는 합성 부재 적용이 있는 바 현장에서 구조설계자의 의도와 가정들이 적절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합성보, 합성기둥의 품질관리 및 구조감리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3.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어 시공 시 접합상세 등의 불가피한 변경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원설계자의 검토 필요함 4. 원설계자가 구조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수공법에 대한 검토사항을 감리 계약서에 명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 5. 부주면 마찰력을 검토함에 있어 본 설계와 같이 선단지지말뚝의 경우, 말뚝 설치 후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부주면 마찰력은 하중으로 보기 때문에 “극한지지력에서 부주면 마찰력을 뺀 값을 안정율로 나누어 허용지지력을 산정”하지 않습니다.(KDS 11 50 15). 따라서 선단지지말뚝에 대한 설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것. 6. 부주면 마찰력(하중)으로 인한 추가 장기 침하량 고려가 필요 7. 부주면 마찰력(하중)으로 인한 중립축에서의 추가 말뚝 구조 하중에 대한 검토 필요 ※ 심의의견 5번, 6번, 7번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행여부를 심의위원(김동욱)에게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